

NO.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고궁박물관장	2013	주 의	-	-	-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1. 근 거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있어 기술능력 제안서 평가 시 평가 항목 당 점수비중이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평가항목 중 ‘⑤수행실적’ 항목의 경우 정량평가 항목이므로 제출 실적에 따른 평가 점수가 평가위원 간에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상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① 기술·지식 능력 ② 인력·조직·관리기술 ③ 사업수행계획 ④ 지원기술·사후관리 ⑤ 수행 실적 ⑥ 재무구조·경영상태 ⑦ 상호협력 등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평가		20	

2. 지적내용

○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왕실도서 특별전 인테리어 보조물 제작 및 설치’사업에 대한 기술능력 제안서 평가를 하면서 “③사업수행계획” 평가항목을 배점한도인 30점을 초과한 50점으로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 , ‘종묘제기 방법론 연구 및 모형 제작’ 사업에 대한 기술능력 제안서 평가를 하면서 동일업체가 제출한 “⑤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를 평가위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었음

〈 “수행실적” 항목 평가 시 평가위원 평가 결과〉

* 예시) A업체 : A위원(4.5점), B위원(4.0점), C위원 (4.0점)

[사업 개요]

- 계약명 : 조선왕실도서 특별전 인테리어 보조물 제작 및 설치
 - 계약자 : (주)○○○○ (대표 ○○○)
 - 계약금액 : 금 79,500,000원
 - 계약기간 : 2011.8.1 ~ 2011.12.23.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명 : 종묘제기 방법론 연구 및 모형 제작
 - 계약자 : (주)○○ (대표 ○○○)
 - 계약금액 : 금 33,430,000원
 - 계약기간 : 2012.5.3 ~ 2012.11.30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조치할 사항

○ 국립고궁박물관장은 향후 계약업무 수행 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관련자는 주의 처분함

* 관련자(2명)

소속	부서명	직급	성명	관리기간	비고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	○○○	'06.8.22~'13.9.30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학예연구관	○○○	'12.2.10~'13.5.19	현 국립문화재연구소

NO.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고궁박물관장	2013	시 정	환 수	2,876,610	

【제 목】 용역 원가계산 작성에 관한 사항

1. 근 거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절(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 및 5절(기타용역의 원가계산)에 따르면 용역 원가계산 시 이윤은 재료비를 제외한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이내로 반영하여야 함

2. 지적내용

○ 국립고궁박물관은 “반구대 암각화 특별전 인테리어 제작 설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면서 이윤 계상은 재료비를 제외하고 산출하여야 하나, 재료비를 포함하여 산출함으로써 2,876,010원을 과다하게 지급함

[산출내역서 재산정 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약 내역	자체 정산 내역 (C)	재산정 산출내역(D)	차액 (C-D)	비고
재료비①	26,151,000	26,151,000	26,151,000		
노무비②	2,593,270	2,593,270	2,593,270		
경비(보험료)③	386,657	-	-		
소계(A) (A = ①+ ②+ ③)	29,130,927	28,744,270	28,744,270		
일반관리비④ (A × 일반관리비율 5%)	1,456,546	1,437,214	1,437,214		
이윤⑤ (②+ ③+ ④) × 이윤율(10%)	3,058,747	3,018,148	403,048	△2,615,100	
소계 (B) (B=①+ ②+ ③+ ④+ ⑤)	33,646,220	33,199,632	30,584,532	△2,615,100	
부가가치세 (B×10%)	3,364,622	3,319,963	3,058,453	△261,510	
합 계	37,000,000	36,519,595	33,642,985	△2,876,610	

[사업 개요]

- 계약명 : 반구대 암각화 특별전 인테리어 제작 설치
- 계약자 : (주)○○○○ (대표 ○○○)
- 계약금액 : 금 37,000,000원
- 계약기간 : 2013.4.19~2013.5.20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수의계약 (긴급행사)

3. 조치할 사항

- 국립고궁박물관장은 과다지급된 2,876,610원은 환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NO.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고궁박물관장	2013	시 정	환 수	2,073,500	

【제 목】 용역사업 지체상금 미부과에 관한 사항

1. 근 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지체상금률은 동법 시행령 제76조(지체상금률)에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동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제66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지체상금 산출방법(용역) : 계약금액 × 0.25% × 지체일수

2. 지적내용

-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왕실문화 역사도감 복식문화편 일러스트 제작” 용수행하면서, 계약기간보다 62일이 지체되어 납품되었음
- 이는 ‘일러스트 구성요소’ 등 과업내용이 추가되어 실제 33일이 소요되었음에도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으며, 또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지체일수 29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 지체상금 산출내역 : 28,600,000원 × 0.25% × 29일 = 2,073,500원

[지체일수 산정내역]

- 계약상대자 귀책일수 : 29일
 - 작업내용 : 복식 유물의 솔기선 표시
- 발주기관 요구 사항 작업 일수 : 33일
 - 작업내용 : 유물 사진에 보이지 않는 구성요소 추가
 - 선 두께 및 음영 밝기 조정
 - 세부 컬러 조정 등

[사업 개요]

- 계약 명 : 조선왕실문화 역사도감 복식문화편 일러스트 제작
- 계약 자 : ○○○○○○ (대표 ○○○)
- 계약금액 : 금 28,600,000원
- 계약기간 : 2011. 11. 3 ~ 2011. 12. 23
- 완료일자 : 2012. 2. 23 (지체일수 62일)
- 계약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조치할 사항

- 국립고궁박물관장은 지체상금 2,073,500원을 환수하시고, 과업내용이 변경되어 계약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향후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NO.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고궁박물관장	2013	시 정	환 수	199,700	-

【제 목】 사후원가검토 대상품목 정산에 관한 사항

1. 근 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에 따르면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일부 비목의 경우 사후 원가검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적내용

○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종합기계실 전기 개선공사’ 발주 시 전기·소방시설 등 설계도서비와 전력비, 발전기 임대료 등 항목을 신설하고 조달청 의견에 따라 사후 원가검토 조건으로 15,267,350원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 시 정산하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업체가 제출한 증빙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산금액보다 적은 15,085,805원이 정산되어 결과적으로 199,700(부가가치세 포함)원을 과다 지급함

[사업 개요]

- 계 약 명 : 종합기계실 전기 개선 공사
- 계 약 자 : ○○엔지니어링 (대표 ○○○)
- 계약금액 : 금 893,800,000원
- 계약기간 : 2011. 4. 6 ~ 2012. 8. 30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조달청 계약)

3. 조치할 사항

○ 국립고궁박물관장은 과다 지급된 199,700원은 환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람

NO.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고궁박물관장	2013	시 정	환 수	429,450	-

【제 목】 폐기물 처리 비용 정산에 관한 사항

1. 근 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제2항에 따르면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적내용

○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의 어보 특별전 인테리어 및 전시보조물 설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시설물 철거에 따라 10톤의 폐기물이 발생될 것이라고 계획하여 처리비용을 반영하였으나,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정산 자료에 따르면 실제 처리한 물량은 4.9톤으로 당초 계획보다 약 5.1톤이 적게 발생되었음에도 준공대금 지급 시 별도 정산을 하지 않아 429,450원을 과다 지급함

〈폐기물 처리비용 정산 내역〉

(단위 : 원)

구 분	당초 계획(A)	정산 내역(B)	차액(A-B)	비고
폐기물 수집 운반(10톤)	38,548×10톤=385,480	38,548×4.9톤=188,885	△ 196,595	
폐기물 처리 비용(10톤)	38,004×10톤=380,040	38,004×4.9톤=186,220	△ 193,820	
소 계	765,520	375,105		
부가가치세(10%)	76,552	37,510	△ 39,042	
합 계	842,072	412,615	△ 429,450	

[사업 개요]

- 계약명 : 조선의 어보 특별전 인테리어 및 전시보조물 설치
- 계약자 : (주)○○○○ (대표 ○○○)
- 계약금액 : 금 73,500,000원
- 계약기간 : 2012.4.20 ~ 2012.7.30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조치할 사항

- 국립고궁박물관장은 과다 지급된 429,450원은 환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NO.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고궁박물관장	2013	시정, 권고	-	-	-

【제 목】 ‘문화재 보존처리’ 사업 하자보수보증금 미부과에 관한 사항

1. 근 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문화재수리업자의 하자담보 책임)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의 완공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책임 기간(별첨 참조)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이 있음

○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함

2. 지적내용

○ 국립고궁박물관은 소장유물의 보존처리를 위해 2011년 이후 ‘소장유물(노부류) 위탁 보존처리’ 용역 등 총 6건의 용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 체결 시 5건의 용역계약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였음에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고 용역사업을 종료하였으며, ‘현판류 보존처리’ 용역 계약 1건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지 않음

* ‘문화재 보존처리’ 분야는 사업완료 후 하자발생의 소지가 있음에도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하자보수책임담보에 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보증금률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률 개정이 필요함

[소장유물 보존처리 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기간	업체명	계약 시 하자 담보 책임기간
1	(노부류) 위탁 보존처리	28,700	수의계약 (특정인의 기술)	'11.6.24~12.20	○○○○	1년
2	현관류 보존처리	17,000	수의계약	'11.11.4~12.22	○○○○	미설정
3	목제유물 위탁 보존처리	17,000	수의계약	'12.10.24~11.27	○○○○	1년
4	회화류 긴급보존처리	148,000	일반경쟁	'12.6.4~12.24	○○○○	1년
5	목제유물(용평상) 위탁 보존처리	60,000	수의계약 (재공고)	'13.2.26~9.10	○○○○	1년
6	2013년 소장유물 (회화류) 긴급보존처리	120,600	수의계약 (재공고)	'13.3.12~11.15	○○○○ . ○○○	1년
총 6건		391,300				

3. 조치할 사항

- 국립고궁박물관장은 향후 문화재보존처리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부과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시정)
- 수리기술평과장은 문화재보존처리 사업에 대하여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 납부에 대한 근거 규정이 포함되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권고)

[별첨]

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제19조 관련)

종류	세부 공종	책임 기간
1. 성곽	가. 석성(石城)	
	1)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5년
	2) 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3년
	나. 토성(土城), 혼축성(混築城)	2년
	다. 전축성(塼築城)	3년
	라. 목책성(木柵城)	1년
2. 탑·석조물	가. 석불(石佛), 부도(浮屠), 비석(碑石), 석등(石燈), 당간지주(幢竿支柱), 지석묘(支石墓), 석빙고(石氷庫), 석탑(石塔), 석교(石橋) 등	5년
	나. 전탑(塼塔)	3년
	다.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石材部)	5년
3. 목조건축물	가. 지붕	
	1) 산자(撒子) 또는 개판(蓋板) 이상의 기와지붕	3년
	2)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지붕	2년
	3) 역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	1년
	4)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	1년
	나. 목부재(木部材)	
	1) 기둥, 창방(昌枋), 대들보, 도리 등 주요 구조재	3년
	2) 그 밖의 구조재	2년
	다. 목조건축물의 수장재(修粧材)	1년
	라. 기초 및 기단	
	1) 정(井)자형 장대석 기초	10년
2) 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	7년	
3) 도드락다듬 이상의 석조(石造) 기단·월대(月臺)	5년	
4) 그 밖의 기초 및 기단	3년	
마. 미장 및 아궁이, 굴뚝, 방고래 등 구들과 관련되는 시설의 수리	1년	
바. 건축물의 단청(벽화, 불화 포함)	2년	
4. 담	가. 사괴석(四塊石) 담장	3년
	나. 돌담, 자연석담, 판축(版築)담, 토(土)담, 전축(塼築)담, 와편(瓦片)담	2년

5. 분묘	가. 봉분 시설(잔디심기는 제외한다)	2년
	나. 구조부	
	1) 적석총(積石塚), 석곽묘(石槨墓)	5년
	2) 전축분(塹築墳)	3년
	3) 목곽묘(木槨墓)	1년
다. 병풍석(屏風石)	3년	
6. 도로	가. 암거(暗渠), 배수로, 측구(側溝), 맨홀	2년
	나. 포장	
	1) 박석(薄石), 포방전(鋪方塹)	2년
2) 마사토(磨砂土), 강회다짐, 혼합토 등	1년	
7. 철물	가. 장식철물, 보호철물, 관리철물	2년
	나. 구조철물, 보강철물	3년
8. 조경·식물 보호·발굴지 정비·벽화 등	가. 조경 시설물 및 조경 식재	2년
	나. 식물 보호	3년
	다. 발굴지 정비	2년
	라. 불상개금(佛像改金), 도금(鍍金), 탕화, 옷칠 등	5년
9. 문화재보호 ·보강시설	전통한옥양식 건축물 또는 보호각,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벽,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5년

<적용방법>

- 위 표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기초부터 다시 복원하거나 신설할 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위 책임 기간의 3분의 2로 한다.
 - 가. 기존의 유구(遺構)나 건축물의 가구 등에 덧붙이거나 보충하여 복원·보수하는 경우
 - 나. 기존 구조나 부재를 해체한 후 해체한 부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사용하여 복원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 위 표에 없는 문화재수리 공종(工種)은 위 표의 유사공종에 따르며, 현대식 재료·공법으로 시공한 구조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둘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서 공종별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기간이 긴 기간으로 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NO.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고궁박물관장	2013	시 정	-	-	-

【제 목】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1. 근 거

○ 물품관리법 제19조(재물조사)에 따르면 물품의 취득과 동시에 물품대장에 등재하고, 매년 정기 재물조사를 거쳐 물품 증감사항을 정리, 조달청장에게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 지적내용

○ 국립고궁박물관은 2012.11~12월에 걸쳐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 ○○○○에서 물품 데이터 취득 원장을 근거로 재물조사를 실시한 후 대장정리 및 물품 위치 식별을 위한 전자태그 부착 사업을 완료하였음

* 등재 물품 증감 정리 : 5,482개 → 4,440개로 조정

조정 사유 : 부속품 및 소프트웨어 물품 건수 통합 조정 등

* 전자태그 부착 : 3,770개, 나머지 670개는 기존 태그 활용

○ 동 재물조사를 실시하면서 물품대장에 미등재된 물품 현황을 확인(약품진열장 등 99개)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 등재 또는 불용 등을 하지 않고 있음

* 미등재 물품 내역(별도 붙임)

○ 또한 2012. 1월 이후 관서운영경비(210목)로 구입한 강연대 등 12개의 물품에 대하여도 물품 등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구입물품 미등재 내역 (별도 붙임)

3. 조치할 사항

○ 국립고궁박물관장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대장을 현행화 하는 등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물품대장 미등재 내역(재물조사 실사)

(단위 : 개)

물품명	규격	수량	상태	사용위치	비고
약품진열장	목재,3단,1200*450*900	2	하	1층 보존처리실	
약품진열장	목재,3단,1200*450*900	2	하	1층 보존처리실	
보조탁자	목재,사각,400*400*450	1	하	1층 보존처리실	
책상	목재,1200*800*720	3	하	1층 유물과학과	
작업용의자	목재	6	하	1층 유물과학과	
작업용의자	가죽,등(높),회전	6	하	1층 유물과학과	
작업용의자	천,등(높),회전	5	하	1층 유물과학과	
작업용의자	천,등(낮),회전	1	하	1층 유물과학과	
이동형파일서랍	목재,3단	3	하	2층 전시홍보과	
이동형파일서랍	목재,3단	1	하	2층 전시홍보과	
책상	강재,1800*600*750	2	하	별관동 구식당(창고)	
책상	목재,L형	1	하	별관동 구식당(창고)	
책상	목재,800*400*1600	1	하	별관동 구식당(창고)	
보관함	목재,1000*600*900	1	하	별관동 구식당(창고)	
보관함	목재,3단3열	1	하	별관동 구식당(창고)	
캐비닛	목재,4단	1	하	2층 전산기계실	
캐비닛	목재,4단	1	하	지하1층 도서실	
이동형파일서랍	목재,3단	1	하	별관동 구식당(창고)	
이동형파일서랍	목재,3단	1	하	별관동 구식당(창고)	
이동형파일서랍	강재,3단	2	하	별관동 구식당(창고)	
책상	목재,800*420*1600	2	하	1층 유물과학과(과장실)	
작업용의자	목재,회의용	36	중(하)	별관동 창고1	
회의용책상	목재,1400*600*720	16	하	별관동 창고1	
이동형파일서랍	목재,3단	1	중(하)	전시실2층 로비	
캐비닛	강재,500*320*400	1	하	전시실2층 로비	
캐비닛	강재,500*500*550	1	중(하)	전시실2층 로비	
계		99			

물품 구입 후 물품대장 미등재 내역

(단위 : 개, 원)

구입년도	물품명	단가	수량	구입금액	비고
2012	파티션	640,500	1	640,500	
2012	의자	99,000	1	99,000	
2012	강연대	1,050,000	1	1,600,000	
		550,000	1		
2012	채화 받침대	2,494,500	2	4,989,000	
2012	녹취기	200,000	5	1,000,000	
2012	시계	83,000	1	83,000	
계			12	8,411,500	